

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 이용신청서(은행용) (신규/변경/해지)

담당	책임자	지점장

본인은 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해지
------	-----------------------------	-----------------------------	-----------------------------

◆ 기업 기본정보

기업명		주민/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내선)	
주소			
연락담당자		부서 및 직위	

◆ 서비스 기본정보

기업뱅킹 ID		서비스이용계좌	
		수수료출금계좌	

◆ 서비스 참여자 정보 (참여자에 대한 본인 확인 후 본인확인(필)에 각각 확인자 날인)

구분	참여자 ID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추가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삭제	참여자명		휴대전화	<input type="checkbox"/> SKT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LGT
	월간이체전결한도		월간출금전결한도	본인확인(필)

구분	참여자 ID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추가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삭제	참여자명		휴대전화	<input type="checkbox"/> SKT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LGT
	월간이체전결한도		월간출금전결한도	본인확인(필)

구분	참여자 ID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추가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삭제	참여자명		휴대전화	<input type="checkbox"/> SKT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LGT
	월간이체전결한도		월간출금전결한도	본인확인(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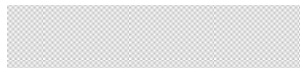
◆ 기타변경사항

변경사항1 ()	변경사항2 ()
--------------	--------------

본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보안매체, 공인인증서 암호, 사용자암호 등)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 위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6조)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하나전자금융이용서비스약관, 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 이용약관을 승인하고 위와 같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법인인감)/서명

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 이용약관

제 1조(목적)

- ①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전자 금융거래기본약관, 하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을 적용한다.

제 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인권자”라 함은 기업이 기업예금 인출거래를 함에 있어 인출거래에 대한 허락여부를 결정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2. “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라 함은 기업예금 인출거래를 함에 있어 기업이 지정한 승인권자가 승인을 한 후 예금 인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참여자”라 함은 이 서비스에 따라 기업예금 인출거래에 대해 승인신청하고 처리하는 이 서비스 사용자들을 말하며, 각 참여자는 자신의 권한으로 승인처리 할 수 있는 전결한도를 가진다.
4. “접속비밀번호”라 함은 참여자가 기업예금 인출거래에 대해 승인신청하고 처리하는 이용수단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은행이 참여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터넷뱅킹용 비밀번호를 말한다.
5. “모바일접속비밀번호”라 함은 참여자가 기업예금 인출거래에 대해 승인신청하고 처리하는 이용수단으로 모바일폰용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은행이 참여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바일폰용 서비스프로그램의 비밀번호를 말한다.
6. “승인비밀번호”라 함은 참여자가 예금 인출거래에 대해 승인을 신청 및 처리할 때에 은행이 참여자 본인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말한다.
7. 기타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하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관련 약관 및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서비스 범위)

- ①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좌는 외화계좌를 제외한 당행 요구불계좌로 한다.
- ② 은행은 기업예금 인출거래를 함에 있어 기업이 지정한 참여자가 승인을 신청 및 처리하는 이용매체로 기업뱅킹과 모바일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③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로 한다. 단, 공과금납부, 대출원리금/이자상환, 사용자가 별도 계약을 통해 등록한 자동이체, HanaCBS를 이용한 자금이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은행은 필요한 경우 기업이 지정한 참여자가 승인을 신청 및 처리하는 이용매체와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추가, 변경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4조(서비스 신청)

고객은 서비스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확인,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제 5조(참여자 확인)

- ① 참여자는 반드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핀패드(PIN-PAD)를 통해 승인비밀번호와 모바일접속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 ② 모든 참여자가 은행에 승인비밀번호와 모바일접속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신청은 유효하다.

제 6조 (서비스 이용절차)

- ① 참여자가 자신의 전결한도 범위 내에서 승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승인요청과 동시에 자동승인 된다.
- ② 참여자가 자신의 전결한도를 초과하여 승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참여자는 각자 접속비밀번호, 모바일접속비밀번호, 승인비밀번호를 가진다.

제 7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 ① 은행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2.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를 연체하는 경우
 3. 서비스 사용 중 발생하는 SMS발송수수료를 연체하는 경우

4. 승인비밀번호, 모바일접속비밀번호를 날짜에 상관없이 연속 5회 잘못 입력하였을 때
 5. 기타 서비스 제공이 부적절하다고 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은행은 제 1항 각호의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

제 8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가 변경, 해지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변경, 해지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은 변경, 해지 된다.
- ② 제 7조 제 1항의 사유로 이용이 제한되어 3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비스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③ 고객이 기업뱅킹을 해지 할 때에 서비스 참여자 모두가 해지되는 기업뱅킹이면 서비스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9조(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승인 요청 건에 대한 승인 가능 시간은 기업뱅킹 이용시간에 따른다.
- ② 서비스 승인 완료 된 건에 대한 은행 채널 별 계좌이체 및 현금출금 이용시간은 각 채널 별 이용시간을 따른다.

제 10조(서비스 이용수수료)

- ① 서비스 이용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매월 말일까지 월 단위로 정한다.
- ② 이용수수료는 이용기간 다음달 10일(해당일이 휴일일 경우 익영업일)에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수수료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한다.
- ③ 이용수수료는 서비스이용계좌의 월평균잔액이 은행이 정한 일정액 이상일 경우 면제 할 수 있다.
- ④ 이용수수료는 <표1>에서 정한 바와 같다.

[표1. 기업예금안전거래서비스 이용수수료]

구분	가입월	이용월	해지월
이용수수료	무료	5,000원	5,000원

제 11조(SMS통지수수료)

- ① 서비스 신청, 변경, 해지 관련 SMS통지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 ② 서비스 이용 시 발송되는 SMS에 대한 SMS통지수수료는 서비스이용업체가 부담하며, 서비스 이용수수료와는 별도로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수수료출금계좌에서 매월 은행이 지정한 날에 자동 출금한다.

제 12조(비밀번호의 관리)

- ① 참여자는 비밀번호가 은행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유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승인비밀번호, 모바일접속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영업점에서 비밀번호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3조(면책 사항)

은행은 중대한 과실 없이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기기, 회선장애 및 전산시스템 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정전, 화재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고객이 지정한 모바일폰과 서비스프로그램의 호환불가 또는 모바일폰의 고장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고객이 기업뱅킹의 아이디(ID), 접속비밀번호, 승인비밀번호, 모바일접속비밀번호 등 접근수단 및 통신매체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도용, 위조, 변조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의 신청대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 이외의 제 3자가 통지된 내용을 인지한 경우

제 14조(서비스의 중단)

은행은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그 중단 1개월 이전에 기업뱅킹에 서비스 고객이 볼 수 있도록 1개월간 게시하도록 한다.

제 15조(약관 변경)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이전에 기업뱅킹에 고객이 볼 수 있도록 1개월간 게시하고,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16조(합의관할)

본 약관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용문의
하나은행 Call Center
1599-1111